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193호
- 발 의 자 : 문형주 의원(찬성자 20명)
- 발의일자 : 2016년 5월 25일
- 회부일자 : 2016년 5월 27일

### 2. 제안이유

- 사회의 관심부족,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체육 소외계층에게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체육복지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체육복지 진흥을 위해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라. 체육복지 진흥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 5. 검토의견

### 가. 제정안 개요

- 동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삶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여가 선용을 통해 육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문 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문체계 및 주요내용〉

조번호	조제목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한 사항 규정
제2조	정의	- 체육복지의 정의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4조	책무	-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보호·육성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 수립·시행
제6조	체육복지 진흥사업	-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체육복지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제7조	예산지원	-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제8조	준용	- 규정한 사항 외 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표창	- 개인 및 단체 표창
제10조	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조는 “체육복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 안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 안 제3조는 체육복지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상충을 피하며 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적용대상과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이 서로 중복되거나 모순·충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안 제5조는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육복지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체육복지 진흥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 체육복지 진흥을 위한 현황분석,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관광체육국 내 체육정책팀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sup>1)</sup>)에 의해 2012년 ‘2020체육진흥 기본정책’ 보고서가 완성되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 스포츠 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으로 더불어 사는 서울 실현 ▲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체육시

1)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설 개선으로 시민들의 스포츠 수요에 부응 ▲ 스포츠 조직·제도 개혁으로 시민중심의 스포츠 조직 개편으로 이루어져 있음.

이에 동 조례를 제정시 기존에는 서울시민들 누구나를 대상으로 한 체육진흥 수립이었다면 서울시 체육복지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의 대상은 체육 소외계층으로 세분화되어 체계적인 체육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체육복지 진흥사업)

- 안 제6조는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체육사업 중 저소득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 예산, 기금으로 운영되는 총 7개의 사업이 있는 바, 국비지원을 받아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바우처)’ 사업이 1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장애인 체육 우수선수 육성 지원’, ‘장애인 선수단 창단 지원’,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5개, 기금사업 중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 1개가 있으며,

저소득 계층별(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로 나누어 봤을 때 대부분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이고 저소득 여성에 대한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저소득 계층별 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시행주체		사업명(대상계층)	'16년예산	사업내용
1	서울시장래인체육회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7,025,000	◦내용 - 장애인체육인 육성을 위한 가맹단체 및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 서울시장래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휠체어농구, 장애인탁구) - 장애인 맞춤형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제공,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지원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80,000	◦일시 : '16. 11월 중 ◦장소 : 잠실종합운동장↔성남(풀코스, 10km 등) ◦참가규모 : 국내외 18,000여명
3	국비	25개 자치구	스포츠강좌 이용권 (스포츠바우처)	(×1,682,225) 2,042,702	◦장소 : 공공체육시설 및 자치구 지정 사설 체육시설 ◦대상 :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유·청소년(5~18세) ◦내용 : 체육시설 스포츠 강좌이용권(월70천원) 지원
4	기금		장애인체육 우수선수 육성지원	194,250	◦장애인 우수선수 훈련지원
5			장애인 선수단 창단지원	20,000	◦장애인 선수들의 대회참여의 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운동여건 조성
6			스포츠 복지 프로그램 운영	200,000	◦다문화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스포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
7			25개 자치구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250,000

### ○ 안 제7조(예산지원)

- 안 제7조는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문 내용 중 표기 오류인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에서 제4조가 아닌 제6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 례 안	수 정 의 견
<p>제7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u>제4조의</u> 사업을 수행하는 체육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7조(예산지원) ① ..... <u>제6조의</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라. 종합검토의견

- 현재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의거 생활체육 활동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노인·아동·청소년·여성 및 장애인 등 체육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체육복지 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등 체육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체육 활동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1. 타·시도, 기초자치단체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제정일
1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2011.5.9
2	경상북도	경상북도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2015.5.21
3	울진군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2015.7.30
4	경기도	경기도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16.1.4